

## 회 의 록

(2014학년도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

□ 일 시 : 2015. 1. 14.(수) 14:00~15:00

□ 장 소 : 본부 6층 재정관리본부 회의실

□ 참석현황(전원참석)

- 위원(10명) : 위원장 안영진, 평의원회 대표 임칠성, 재정전문교수 백성준, 재무과장 김현재, 총학생회 정상엽, 총학생회 박현이, 총학생회 김현조, 총학생회(여캠) 장민수, 외부관련전문가 송진희, 학부모대표 전종현
- 간사(2명) : 재무과 오선진, 재정관리과 배태관
- 배석(1명) : 재정관리과 김아영

□ 안 건

1. 2015학년도 전남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
2.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안) 심의

□ 심의 사항

1. 개회 선언

⇒ 총 위원 10명 중 10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함.

2. 전차 회의록

⇒ 간사로부터 전차 회의록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원안 통과함.

3.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 위원장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소개함.

○ 위원장 : 회의 자료에 의거 '교육부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음.

- 전년 대비 1,425억원 증액된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소득 최하위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며,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대학이 지원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함.
- 우리대학은 '14년도에 등록금을 약 0.22% 인하하였고 장학금을 추가

확충하여 약 29억원을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인정받았으며,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약 278억원을 지원 받았음을 설명함.' 15년도에도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자체 노력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 **위원장** : 회의자료에 의거 " 2015년도 국립대학운영지원사업 예산 편성" 에 대하여 설명함.

- 우리대학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등록금을 동결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인하하여 지속적인 세입감소로 인해 재정부담 가중 상태인 반면,
- 보수 인상, 강사료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 등 대학공통경비 증가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대학 자체적으로 기중경비 30%를 삭감하고, 주요사업비의 경우 본부 15%, 단과대학 20%를 삭감하여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였음을 설명함.
- 각 기관별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세입 대비 약26억원이 부족하였고, 추가로 요청한 사업비(58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약 84억원이 부족하였음을 설명함.
- 5차례의 재정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입·세출 수지를 조정하였음을 설명함.

○ **위원장** : 회의자료에 의거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원에게 의견을 주실 것을 요청함.

- 편제정원 변경(의과대학 정원 증가 등)으로 자연적으로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나, 2014년도부터 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은 "동결"로 인정되어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가 가능함을 부연 설명함.
- **학생위원** :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기성회비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등록금은 기성회비를 제외한 입학금과 수업료라 생각함. 실제 등록금을 수업료인 약 40만원이라 했을 경우, 등록금 책정(안)대로 법적 근거가 없는 구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것은 등록금 상한제(최근 3년간 물가 인상을 평균(1.6%)의 1.5배)에 위배되므로 입학금과 수업료만 우선 징수하고, 추후에 국회에서 별도의 법안이 통과되면 구 기성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학생위원** : 실제로 대학원의 경우에도 입학금 및 수업료만 우선 징수하고, 기성회비는 추후에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처리를 한 바 있으므로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행정적 혼란을 막기 위해 신입생 및 학부모께 충분히 공지가 잘 되어야 할 것임.

- **교직원위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이 2015.02.28. 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수업료만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큰 행정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설명함.
- **교직원위원** :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타 대학에서도 이를 위배해 가면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며, 법률적인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면 다른 대학의 사례나 학교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통합 징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교직원위원** :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학교 측에서도 통합 징수를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설명함.
- **위원장** : 학생위원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수 방법을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기로 하되 신입생 등록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주까지 의견을 조정하고 교육부 방향을 참고하여 재논의하기로 함.
- **교직원위원** : 지속적인 등록금 인하와 동결로 결국에는 대학이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육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 현재 사회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포기하면서까지 타 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리려는 입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전남대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결보다는 약간의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 **외부전문가위원** :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실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기성회가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비를 받는 입장에서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짐. 또한 시설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는데 그 전 세대에서 납부한 등록금으로 마련된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현 세대에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아 몇 년 후에 우리 후배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임. 교육부가 나서서 시설투자에 대한 등록금을 일정 부분 별도로 세워 부담을 지게 할 필요가 있음.
- **학생위원** : 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시설 투자 부족에 대한 책임이 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봄. 등록금에 대한 부분은 국가 정책과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람.
- **교직원위원** : 학생위원회에서 제안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등록금이라는 대학이 정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국가에 대한 요구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임.

- 위원장 :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등록금 책정에 대한 의견을 주실 것을 요청함.
  - 학생위원 : 2015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구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향후에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입학금 및 수업료만 이 자리에서 확정을 할 것을 요청함. 현재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여 동결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위원장 : 등록금 수준은 전년 대비 동결하되, 추후에 국회의 법안 통과 상황을 참고하여 등록금의 징수 방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하겠음.
  - 학생위원 : 논의된 결과와는 달리 문서상으로만 보면 등록금에 구 기성회비와 수업료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적 판단이 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등록금은 구 기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 만을 뜻한다고 표시해 주시기를 요청함.
  - 위원장 : 학부와 마찬가지로 대학원도 등록금 수준을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하되 등록금의 징수 방법은 추후에 국회의 법안 통과 상황을 참고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하겠음.
- 위원 전원 찬성함

- 위원장 :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명 후에 원안대로 통과됨.

### ● 2014학년도 제1회 전남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등록금의 징수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로 함.
  1.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의 수준은 전년 대비 수업료 및 구 기성회비 수준으로 동결하되, 등록금의 징수방법은 추후에 국회의 법안 통과 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재검토하겠음.
  2.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안)은 원안대로 통과됨.
-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1월 중에 다시 개최하기로 함.

2015. 1. 14.

작성자 : 간사(재정관리과) 배 태관

확인자 : 위원장(재정관리본부) 안영진